

의안
번호

500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9. 03.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500호
- 다. 제출일자 : 2025. 08. 18.
- 라. 회부일자 : 2025. 08. 27.

2. 제안이유

- 가. 마을활력소는 누구나, 언제나,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나. 현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인 '길음아지트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 위탁기간 만료일(25.12.31.)이 도래하는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 시 설 명 :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 소 재 지 :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34(길음역 지하보도 내)
- 시설규모 : 지하 1층, 140.25㎡(연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등)
- 운영현황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기간	운영내용	공간구성
민간위탁	길음아지트 운영위원회 (대표: 채지연)	2023.1.1. ~2025.12.31.	-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동아리 시설 대관 등	연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운영·관리 사무
- 위탁기간 : 3년(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위탁사무의 범위
 - 마을활력소의 운영 및 관련 사무
 -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마을활력소 시설에 대한 안전 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
- 소요예산 : 없음(사용료·수수료·비용 등 수입금으로 충당)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추진 필요성

- 누구나, 언제나,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고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상황에 능통한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자율성과 자립성을 기반으로 내실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모두의
공간으로써 주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립적 운영방식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동의안은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이하 '마을활력소')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운영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5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마을활력소'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현황 및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음.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위탁현황

□ 시설개요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위 치	-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34(길음역 지하보도 내)
규 모	- 지하 1층, 140.25㎡
시설내용	- 연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 등
범 위	- 마을활력소의 운영 및 관련 사무 -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마을활력소 시설에 대한 안전 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

□ 운영현황

- 위탁기간: 3년 ('23.01.01.~'25.12.31.)
- 위탁기관: 길음아지트 운영위원회 (대표: 채지연)
- 회 원 수: 총12명 (2025. 1. 기준, 운영위원회)
- 소요예산: 없음 (사용료·수수료·비용 등 수입금으로 충당)
- '24년 주요사업: 4개 세부사업, 10개 프로그램

< 2024년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프로그램 운영 결과 >

세 부 사업명	프로그램명	월별 이용자수(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프로그램/ 동아리/ 공동체 사업	화요민화(오전)	40	40	40	40	36	32	32	36	32	32	36	40	436
	화요민화(오후)	40	40	40	32	32	40	32	24	24	24	28	32	388
	목요민화(오전)	32	28	32	32	28	32	16	20	-	-	-	-	220
	목요민화(오후)	-	-	-	24	24	24	24	24	24	24	20	8	196
	수채화유화	20	12	12	20	12	12	-	-	-	-	-	-	88
	재봉	20	20	20	16	16	16	12	-	16	16	24	24	200
	난타(10시)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80
	난타(1시)	32	32	32	32	32	32	40	40	40	40	40	40	432
	난타(3시)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80
	색연필/어반스케치	-	-	-	-	-	-	48	48	48	48	48	40	280
	프로그램 합계	264	252	256	276	260	268	284	272	264	264	276	264	3,200
	회화유희(민화동아리)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88
	탐스핀(밴드 동아리)	24	24	24	24	24	24	20	20	20	20	20	20	264
	꽃바람(꽃꽂이동아리)	-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64
	길나랑(해금동아리)	40	40	40	40	40	40	48	48	48	48	48	48	528
	성실모(연극)	-	-	-	80	80	80	80	80	80	80	80	80	720
	스키마(독서)	-	-	-	-	-	-	20	20	20	20	20	20	120
	소나기(연극)	-	9	36	36	-	-	-	-	-	-	-	-	81
	섹소폰연습	4	4	4	4	4	4	4	4	4	4	4	4	44
	종암난타동아리	28	28	28	28	28	-	-	-	-	-	-	-	140
	동아리 합계	120	153	180	260	224	196	220	220	220	220	220	220	2,449
	동네배움터					36	21	36	-	-	-	-	-	93
	공간활성화				112	10	97	15	12	15	84	-	-	345
	운영위 회의				6	6	6	6	6	12	6	6	6	60
	공동체 합계				118	52	124	57	18	27	90	6	6	498
합 계														6,147

□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5조1)에서 구청장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2)는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활력소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시설 및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상황에 밝고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3)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선정방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1)「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3.13.)

3)「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